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17.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조문 위치를 조정하고, 협의체의 구성 목적을 명확히 하며, 협의체의 참여자를 명시하는 등 재외공관의 장이 운영하는 협의체의 기본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약체의 구성·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5조의2(협업체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법인·단체 등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협업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업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신설>		제8조(협업체의 구성·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

	<u>화교류 등에 관한</u> <u>사항을 협의하기</u> <u>위하여 관할 구역</u> <u>의 행정기관 및 그</u> <u>밖의 기관·법인·</u> <u>단체 등으로 구성</u> <u>된 협의체를 구성</u> <u>· 운영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55
----------	-------

발의연월일 : 2025. 5. 2.

발 의 자 : 김 건 · 김정재 · 김태호
윤재옥 · 유용원 · 이현승
서일준 · 강선영 · 박상웅
최보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 5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조 위치를 제8조로 하고, 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 제목을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함(안 제8조 신설).

나. 협의체의 구성 목적을 명확히 하고, 협의체의 참여자를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법인 등’으로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약체의 구성·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협약체의 구성·운영 등)</u> ① <u>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약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협약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